



키움증권 주식회사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년 3월 5일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확인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연차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5일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 주 성 (서명)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3
다. 관련 규정	10
2. 이사회	11
가. 역할 (권한과 책임)	11
나. 구성 (이사)	16
다. 활동내역	27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38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39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0
가. 역할 (권한과 책임)	40
나. 구성	40
다. 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요	41
라. 활동내역 및 평가	41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4
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55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56
아.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56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57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57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58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60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60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63
바. 사외이사 평가.....	63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63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64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67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68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69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69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69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70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71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72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73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73
6. 감사위원회.....	74
가. 역할 (권한과 책무).....	74
나. 구성 (감사위원회위원).....	7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9
라. 감사보조조직 등.....	86

7. 리스크관리위원회	87
가. 역할 (권한과 책무)	87
나. 구성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8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90
8. ESG위원회	96
가. 역할 (권한과 책무)	96
나. 구성 (ESG위원회위원)	9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97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00
가. 역할 (권한과 책무)	100
나. 구성 (보수위원회위원).....	101
다. 권한과 책임.....	102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05
2. 보수체계	108
가. 주요사항	108
나. 보수 세부사항	112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13
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16
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16

[첨부]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지배구조 내부규범

첨부4.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키움증권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키움증권은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원 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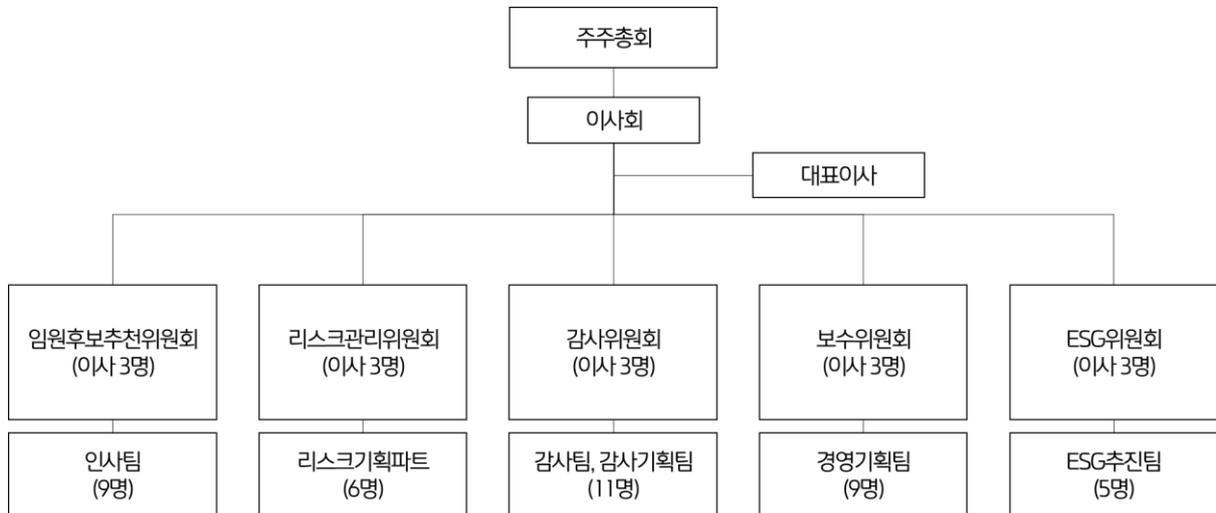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iwoom.com>)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ofia.or.kr>)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키움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사회 내에 다섯 개의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각 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3인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 (요약)

(2024.12.31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및 위원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	(4명/7명)	(이근희/사외)	정관 제41조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업무집행 등에 대한 감사 및 내부통제	(3명/3명)	(정주렴/사외)	정관 제44, 48조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추천	(2명/3명)	(이근희/사외)	정관 제44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수 제도운용	(3명/3명)	(박성수/사외)	정관 제44조 보수위원회규정
리스크 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감독 및 통제	(2명/3명)	(정주렴/사외)	정관 제44조 리스크관리규정
ESG위원회	ESG 경영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2명/3명)	(유광열/사외)	정관 제44조 ESG 위원회 규정

(4) 주주

(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준수여부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¹⁾		√
	② 전자투표 실시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이사회	⑥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비상시 선임 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감사기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1) 2024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부터 4주 전 소집공고를 적용 ('25.02.25. 소집공고, '25.03.26. 주주총회)

(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내역

구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4.03.13. (주총 15일 전)	2023.03.13. (주총 15일 전)	2022.12.12. (주총 15일 전)	2022.03.11. (주총 17일 전)
공고일		2024.3.13. (주총 15일 전)	2023.03.13. (주총 15일 전)	2022.12.12. (주총 15일 전)	2022.03.11. (주총 17일전)
주주총회 관련 사항 주주 통보 방법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한국예탁결제원 위임	한국예탁결제원 위임	한국예탁결제원 위임	한국예탁결제원 위임
개최일시		2024. 03. 28. 오전9시	2023. 03. 28. 오전9시	2022. 12. 27. 오전9시	2022. 03. 28. 오전9시
개최일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개최장소		본사 2층 대강당	본사 2층 대강당	본사 2층 대강당	본사 2층 대강당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전원출석	전원출석	전원출석	전원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다) 최근 1년간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내역

정기		제25기 주주총회				2024. 03. 28.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①) ¹⁾	①중 해당 안건에 의견표시한 주식 수(A) ²⁾	찬성 주식수(B) (비율, %) ³⁾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⁴⁾
제1호 의안	보통	제25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가결	24,458,100	20,408,590	20,137,993 (98.67%)	270,597 (1.33%)
제 2 호	제2-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조] 목적	가결	24,458,100	20,408,590	20,388,355 (99.90%)	20,235 (0.10%)

의 안	제2-2호	보통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7조] 이사의 임기	가결	24,458,100	20,408,590	20,387,586 (99.90%)
							21,004 (0.10%)
의 안	제2-3호	보통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가결	24,458,100	20,408,590	20,384,935 (99.88%)
							23,655 (0.12%)
제 3 호 의 안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 - 김지산	가결	24,458,100	20,408,590	18,662,414 (91.44%)
							1,746,176 (8.56%)
	제3-2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 - 유경오	가결	24,458,100	20,408,590	18,662,411 (91.44%)
							1,746,179 (8.56%)
의 안	제3-3호	보통	사외이사 선임 - 이군희	가결	24,458,100	20,408,590	19,865,871 (97.34%)
							542,719 (2.66%)
의 안	제3-4호	보통	사외이사 선임 - 유광열	가결	24,458,100	20,408,590	20,383,254 (99.88%)
							25,336 (0.12%)
제4호 의안	보통	이군희(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10,787,045	6,786,327	6,636,599 (97.79%)	
						149,728 (2.21%)	
제5호 의안	보통	정주렴(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787,045	6,786,327	6,760,989 (99.63%)	
						25,338 (0.37%)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4,458,100	20,408,590	16,870,711 (82.66%)	
						3,537,879 (17.34%)	

1)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x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x 100

(라) 최근 3년간 배당 내역

(단위 : 원)

사업 연도	결산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액면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 기준	별도 기준
2024*	12월	보통주	-	5,000	7,500	178,360,207,500	150.0%	21.4%	21.4%
		RCPS (제3차)	-	5,000	14,979	2,489,600,252	299.6%	0.3%	0.3%
		RCPS (제4차)	-	5,000	9,362	24,828,822,391	187.2%	3.0%	3.0%
2023	12월	보통주	-	5,000	3,000	73,374,300,000	60.0%	16.6%	21.7%
		RCPS (제3차)	-	5,000	9,386	1,559,983,518	187.7%	0.4%	0.5%
		RCPS (제4차)	-	5,000	4,963	13,164,241,628	99.3%	3.0%	3.9%
2022	12월	보통주	-	5,000	3,000	74,458,539,000	60.0%	14.7%	15.1%
		RCPS (제3차)	-	5,000	9,386	1,559,983,518	187.7%	0.3%	0.3%
		RCPS (제4차)	-	5,000	4,963	13,199,945,961	99.3%	2.6%	2.7%
2021	12월	보통주	-	5,000	3,500	90,018,295,500	70.0%	10.0%	11.7%
		RCPS (제3차)	-	5,000	9,386	1,559,983,518	187.7%	0.2%	0.2%
		RCPS (제4차)	-	5,000	4,963	13,199,945,961	99.3%	1.5%	1.7%

1) 2024년 결산에 따른 배당을 의미하며, '25.03.26. 주주총회로 확정 후 지급 예정

(마) 주식발행 현황

(2024.12.31. 기준)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비고
보통주		60,000,000*	25,526,706	-
종류주	제3차 상환전환우선주		166,203	21.06.30. 발행
	제4차 상환전환우선주		2,652,070	

* 「정관」 제5조에 따라, 보통주 및 우선주를 합해 육천만 주를 의미

(사)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4.02.20.	국내 기관 투자자	IR	주요 경영성과 및 최근 사업현황	
2024.04.03.	해외 기관 투자자	IR	'NHIS Korea Corporate Day' 참여	
2024.05.02.	국내 기관 투자자	컨콜	주요 경영성과 및 최근 사업현황	
2024.05.07.	국내 기관 투자자	IR	주요 경영성과 및 최근 사업현황	
2024.05.21.	국내 기관 투자자	IR	대신증권 주관 'Corporate Day' 참여	
2024.07.31.	국내 기관 투자자	컨콜	주요 경영성과 및 최근 사업현황	
2024.08.01.	국내 기관 투자자	IR	주요 경영성과 및 최근 사업현황	
2024.08.20.	해외 기관 투자자	IR	'Goldman Sachs Korea Corporate Day' 참여	
2024.10.30.	국내 기관 투자자	컨콜	주요 경영성과 및 최근 사업현황	
2024.10.31.	국내 기관 투자자	IR	주요 경영성과 및 최근 사업현황	
2024.11.14.	해외 기관 투자자	IR	'Daiwa Investment Conference Hong Kong' 참여	

(아) 공정공시 및 주요공시 내역

공시 일자	공시 제목	주요 내용
2024.01.08.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대표이사 변경 (황현순 → 엄주성)
2024.01.26.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신탁계약('23. 10월 ~ '24. 04월)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중간현황 공시
2024.03.13.	현금 · 현물배당결정	2023사업연도 배당 결정 상세내역
2024.03.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주주환원정책 강화
2024.03.13.	주식소각결정	기 보유 자기주식 70만 주 소각
2024.04.2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자기주식 1,395,345주 취득 완료
2024.05.02.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4년 1분기 잠정실적
2024.05.28.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회사의 기업가치 계획 발표
2024.07.31.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4년 2분기 잠정실적

2024.08.1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주주환원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주식 35만주 추가 취득
2024.10.14.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자기주식 35만주 취득 완료
2024.10.30.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4년 3분기 잠정실적
2024.12.18.	현금·현물배당결정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2024사업연도 배당 예상액 공시

다. 관련 규정

- ◎ 첨부1. 정관
- ◎ 첨부2. 이사회 규정
- ◎ 첨부3. 지배구조 내부규범

2. 이사회

가. 역할 (권한과 책임)

(1) 총괄

키움증권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 구체적 역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경영목표·평가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개폐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등 경영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제2차 이사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주주총회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제2차·제7차 이사회에서는 내부통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키움증권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제15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 구체적 수립에 필요한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경영목표·전략은 2024년 말 키움증권 경영진이 내부 전략회의를 통해 수립하고, 2025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해외주식 경쟁력 강화, 금융상품 판매고 증대, 신사업인 퇴직연금 및 단기금융업 등)

(나) 정관 변경

키움증권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제15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

2024년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었고, 이사회 심의를 통해 주주총회에 부의하도록 결의되었습니다.

- (사업 목적) 열거된 사업목적 제1~72호를 제1~5호로 정비
- (이사의 임기) 사내이사의 최대 임기를 사외이사와 같이 2년으로 통일
- (이사의 보수) 등기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예산 및 결산승인

키움증권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제15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회사의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 예산은 당해 연도 경영목표에 포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결산안은 독립적으로 부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구체적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안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사회(2024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결산 재무제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 의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결산 및 배당

(단위 : 억 원)

구 분	연결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자산총계	520,464	433,533
부채총계	471,423	390,808
자본총계	49,041	42,726
영업수익	95,448	85,887
영업이익	5,647	4,724
당기순이익	4,407	3,384
배 당	총 881억 원 (보통주 3,000원 / 3우선주 9,386원 / 4우선주 4,963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키움증권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제15조에 따라 회사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 법인 등의 설치, 이전, 폐지에 대해 부의 의결합니다.

2024년에는 관련된 의결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키움증권은 법령 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내부통제체계, 행동규범, 준수점검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체계·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자신의 직무에 따라 필요시 제반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결과 보고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의 역할 및 직무의 독립성은 내부통제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는 각종 내부통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및 정기적 점검(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업부서에 시정, 개선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연 1회 이상 내부통제활동 및 준법감시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제3차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키움증권은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리스크관리 관련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관련 심의·의결

키움증권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규정, 각 위원회별 규정 등 관련 사규를 제정하고 자율적인 준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모두 지배구조의 원칙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사회에 그 제정 및 개정, 폐지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대하여 당사는 2017년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승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연임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키움증권은 이해상충 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주요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규정 제7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8조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 이사의 반대를 통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그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방지 및 Chinese Wall 적용 매뉴얼」을 구비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상충 및 금지 행위, 대주주·임원,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 및 금지 행위를 명시하여 정보교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업무상 교류 금지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 사전 신청서 및 회의록 작성, 계약서 징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이사)

(1) 총괄

키움증권 이사회는 총원은 지배구조법 제12조 및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는 3인 이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이사회는 7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으로는 이군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의 경우 정관 제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임기는 지나치게 긴 경우 주주의 유효한 견제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① 사외이사 이군희 (이사회 의장)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학사

美 University of Missouri 통계학 석사/박사

[경력사항]

'86.01. ~ '87.06. 한국컴퓨터 기술연구소 컴퓨터 엔지니어

'92.03. ~ '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96.09. ~ '97.02.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특별연구원

'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전임교수

'22.03. ~ 현재 키움증권(주)

[임기]

'24.03. 재선임 ~ '25.03. 정기주주총회일 (최초 선임 : '22.03.)

② 대표이사 엄주성 (대표이사 사장, 상근)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 학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투자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93.09. ~ '07.05. 대우증권

'07.06. ~ '13.12. 키움증권(주)

'14.01. ~ '22.03. 키움증권(주) 투자운용본부장

'22.03. ~ '23.12. 키움증권(주) 전략기획본부장

'24.01. ~ 현재 키움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임기]

'24.01. 선임 ~ '27.03. 정기주주총회일

③ 사내이사 김지산 (임원, 상근)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사항]

'02.12. ~ '07.06. 한화증권

'07.06. ~ '19.12. 키움증권(주) 리서치센터

'19.12. ~ '23.12. 키움증권(주) 리서치센터장

'22.03. ~ 현재 키움증권(주) 전략기획부문장

[임기]

'24.03. 선임 ~ '26.03. 정기주주총회일

④ 사내이사 유경오 (임원, 상근)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석사

[경력사항]

'90.05. ~ '99.08. 장기신용은행

'99.08. ~ '00.04. 삼성증권

'00.04. ~ '15.12. 키움증권(주)

'16.01. ~ '22.03. 키움증권(주) 경영지원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22.03. ~ '24.01. 키움증권(주) 재무결제본부장

'24.01. ~ 현재 키움증권(주) 재무지원부문장

[임기]

'24.03. 선임 ~ '26.03. 정기주주총회일

⑤ 사외이사 박성수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美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경력사항]

'95.03. ~ '02.02. 수원, 서울, 대전지방법원 판사

'02.02. ~ '05.02. 특허법원 판사

'05.02. ~ '08.02. 대법원 재판연구원

'08.02. ~ '09.02. 총괄국제심의관 부장판사

'09.02. ~ '10.02.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

'10.02. ~ '11.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1.03. ~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3.03. ~ 현재 키움증권(주)

[임기]

'23.03. 선임 ~ '25.03. 정기주주총회

⑥ 사외이사 유광열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경력사항]

'86.04. ~ '17.11. 재정경제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재경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17.11. ~ '20.06.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12. ~ '23.12.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24.03. ~ 현재 키움증권(주)

[임기]

'24.03. 선임 ~ '26.03. 정기주주총회일

⑦ 사외이사 정주렴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회계학 전공)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회계학 전공)

[경력사항]

'99.11. ~ '03.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3.05. ~ '11.03. BAT Korea 이사

'17.03. ~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부교수

'17.03. ~ 현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 연구 편집의원

'17.03. ~ 현재 한국세무학회 윤리위원회 위원

'24.03. ~ 현재 키움증권(주)

[임기]

'24.03. 선임 ~ '26.03. 정기주주총회일

㉔ 사내이사 박연채 (사임)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시카고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89.10. ~ '91.08. 한일투자신탁

'94.08. ~ '95.08. James Capel

'95.09. ~ '03.02. Merrill Lynch

'03.03. ~ '06.04. 한누리증권

'06.05. ~ '24.03. 키움증권(주)

[임기]

'22.03. 선임 ~ '24.03. 사임

㉕ 사외이사 신현준 (사임)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美 University of Missouri 경제학 석사/박사

[경력사항]

'92.04. ~ '04.01. 재무부 국제관세과, 부총리비서실, 예산정책과, 은행과, 보험과 사무관·서기관

'04.02. ~ '07.12.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미래기획위원회 과장

'08.01. ~ '13.08.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자산운용과장, 보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13.08. ~ '17.08. 주 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국장

'17.08. ~ '19.02.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19.03. ~ '23.01.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22.12. ~ '24.01. 키움증권(주)

[임기]

'22.12. 선임 ~ '24.01. 사임

⑩ 사외이사 김재식 (임기만료, 퇴임)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학사

[경력사항]

'77.01. ~ '02.01. 삼성물산(주)

'02.01. ~ '07.01. 삼성SDI(주)

'07.05. ~ '08.08. 유진그룹 총괄 부회장

'10.01. ~ '21.03. (주)에트라스 대표이사

'21.03. ~ '24.03. 키움증권(주)

[임기]

'23.03. 재선임 ~ '24.03. 정기주주총회일 (최초 선임일: '21.03.29.)

⑪ 사외이사 최선화 (임기만료, 퇴임)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학 전공)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회계학 전공)

[경력사항]

'01.11. ~ '04.10. 삼정 KPMG 회계법인(감사본부), Supervisory Senior

'11.09. ~ '18.02. Lancaster University 조교수

'17.09. ~ '20.0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부교수

'20.03. ~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회계학 전공)

'21.03. ~ '24.03. 키움증권(주)

[임기]

'23.03. 재선임 ~ '24.03. 정기주주총회일 (최초 선임일: '21.03.29.)

(3) 요약

직책	성명	상임/비상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담당 위원회
이사회 의장	이군희	비상임	-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특별연구원 - 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전임교수	'22.03.28.	'25.03. 정기주총일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대표 이사	엄주성	상임	- 대우증권 - 키움증권 투자운용본부장 -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 - 현)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	'24.01.08.	'27.03. 정기주총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내 이사	김지산	상임	- 한화증권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 현)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부장	'24.03.28.	'26.03. 정기주총일	-ESG위원회
사내 이사	유경오	상임	- 한국장기신용은행 - 삼성증권 - 키움증권 경영관리본부장 - 현) 키움증권 재무지원부부장	'24.03.28.	'26.03. 정기주총일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 이사	박성수	비상임	- 수원, 서울, 대전지방법원 판사 - 총괄국제심판관,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법 부장판사 - 현) 김·장 법률사무소	'23.03.28.	'25.03. 정기주총일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사외 이사	유광열	비상임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24.03.28.	'26.03. 정기주총일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 이사	정주렴	비상임	- 삼일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 BAT KOREA 이사 - 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현) 한국경영학회경영학연구편집위원 - 현) 한국세무학회 윤리위원회	'24.03.28.	'26.03. 정기주총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내 이사	박연채 (사임)	상임	- Merrill Lynch - 한누리투자증권	'22.03.28.	'25.03. 정기주총일 (2403.사임)	-ESG위원회
사외 이사	신현준 (사임)	비상임	- 주 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 정부합동부패예방감사단 국장 -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22.12.27.	'24.03. 정기주총일 (2401.사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사외 이사	김재식 (퇴임)	비상임	- 유진그룹 총괄 부회장 - ㈜에트라스 대표이사	'21.03.29.	'24.03. 정기주총일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장)
사외 이사	최선화 (퇴임)	비상임	- Lancaster University 조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부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21.03.29.	'24.03. 정기주총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장)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감사위원회 (총 3명)	위원장	사외 이사	정주렴	1. 내부감사 계획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부서장 임면 동의, 외부감사인 선정 4.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확인 5.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	-
	위원	사외 이사	이군희		
	위원	사외 이사	박성수		
리스크관리 위원회 (총 3명)	위원장	사외 이사	정주렴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기업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등	-
	위원	사외 이사	유광열		
	위원	사내 이사	유경오		
보수위원회 (총 3명)	위원장	사외 이사	박성수	1. 보수체계의 수립·운영·적정성 평가 2. 보수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보수위원회 규정 및 성과보수 규정 마련	-
	위원	사외 이사	이군희		
	위원	사내 이사	유광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총 3명)	위원장	사외 이사	이군희	1. 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위원	사외 이사	정주렴		

	위원	사내 이사	엄주성	4. 내부 제도 정비를 통한 모범적인 지배구조 체계 수립	
ESG위원회 (총 3명)	위원장	사외 이사	유광열	1. 연간 ESG 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승인 2. ESG 관련 상품 및 투자 등 중요 정책의 승인 3. ESG 관련 계획의 이행 현황 및 대외평가 결과 검토	-
	위원	사외 이사	박성수		
	위원	사내 이사	김지산		

(5)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4.03.13.	2024.03.28.	사내	유경오	1. 후보자의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에 후보 추천 사유 6. 이사선임확인서	
		사내	김지산		
		사외	이군희		
		사외	유광열		
		사외	정주렴		

(6) 최근 3년간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외이사	김대식	2019.03.26.	2022.03. 정기주총일	2022.03. 정기주총일	임기만료	퇴직
	이석환	2021.03.29.	2022.12. 사임	2022.12.	사임	퇴직
	이순우	2020.03.25.	2023.03. 정기주총일	2023.03. 정기주총일	임기만료	퇴직
	김재식	2021.03.29.	2024.03. 정기주총일	2024.03. 정기주총일	임기만료	퇴직
	최선화	2021.03.29.	2024.03. 정기주총일	2024.03. 정기주총일	임기만료	퇴직

	신현준	2022.12.27.	2024.01. 사임	2024.01.	사임	퇴직
	이군희	2022.03.28.	2025.03. 정기주총일	2024.03. 정기주총일	재선임	재직
	박성수	2023.03.28.	2025.03. 정기주총일	2023.03. 정기주총일	선임	재직
	유광열	2024.03.28.	2026.03. 정기주총일	2024.03. 정기주총일	선임	재직
	정주렴	2024.03.28.	2026.03. 정기주총일	2024.03. 정기주총일	선임	재직
사내이사	이 현	2018.03.22.	2022.03. 사임	2022.03. 정기주총일	사임	퇴직
	김익래	2003.07.14.	2023.06. 사임	2023.06.	사임	퇴직
	박연채	2022.03.28.	2024.03. 사임	2024.03. 정기주총일	사임	퇴직
	황현순	2020.03.25.	2024.01. 사임	2024.01.	사임	퇴직
	엄주성	2024.01.08.	2027.03. 정기주총일	2024.01. 임시주총	선임	재직
	김지산	2024.03.28.	2026.03. 정기주총일	2024.03. 정기주총일	선임	재직
	유경오	2024.03.28.	2026.03. 정기주총일	2024.03. 정기주총일	선임	재직

주) 재직 여부의 기준 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임

(7)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재직기간	상장여부
이근희 (감사위원)	2022.03.28.	2025.03. 정기주총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전임교수	-	-	-	-
박성수 (감사위원)	2023.03.28.	2025.03. 정기주총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유광열	2024.03.28.	2026.03. 정기주총일	-	-	-	-	-
정주렴 (감사위원)	2024.03.28.	2026.03. 정기주총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	-	-

(8)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이사/전체사외이사	회의사항	비고
해당사항 없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10회의 이사회가 소집 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7%*입니다.

경영, 법률, 회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지난 한 해 88건의 보고 및 의결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 2024.12.31. 재임이사 기준

(이사회 활동내용 중 중요사항)

2024 - 03차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업가치 제고 방안 보고의 건

2024 - 07차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2024 - 10차 해외계열사 사업계획 보고의 건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 2024년 1월 8일 (10:30 ~ 11:30)

[안건통지일 : 2024년 1월 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엄주성	박연채	김재식	이군희	박성수	최선화	신현준	
1. 이사 성명	엄주성	박연채	김재식	이군희	박성수	최선화	신현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키움캐피탈(주) 기업어음 한도거래 부여 승인의 건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 이사회 구성 변경 : 사내이사 황현순 사임, 엄주성 선임

- 1) 엄주성 대표이사 선임의 건 ('24.01.08.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 2) 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어음 매입 한도 설정

(나) 2024년도 제2차 (결산) 이사회 : 2024년 2월 14일 (10:00 ~ 11:30)

[안건통지일 : 2024년 2월 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엄주성	박연채	김재식	이군희	박성수	최선화	
1. 이사 성명	엄주성	박연채	김재식	이군희	박성수	최선화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6/6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무보증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2024년 경영목표 및 예산 확정 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마. TP타워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도급계약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바.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리테일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사.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일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아.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총무 관련 사항)							
나.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다. 202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수정 제출의 건							
라.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실적 및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계획」 보고의 건							
마. 2023년 내부통제활동 및 2024년 계획 보고의 건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 운영체계 점검」 보고의 건
사. 2023년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보고의 건
아. 2023년 감사결과 보고의 건

* 이사회 구성 변경 : 사외이사 신현준 사임

1) 2024년 거시 환경 및 자본시장 분석에 근거한 전사 경영목표를 이사회에서 결의

(다) 2024년도 제3차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 2024년 3월 13일 (10:00 ~ 12:00)

[안건통지일 : 2024년 3월 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엄주성	박연채	김재식	이군희	박성수	최선화	
1. 이사 성명	엄주성	박연채	김재식	이군희	박성수	최선화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불참	4/6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2023년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나. FY2023 배당 실시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다. 자기주식 소각의 건 ¹⁾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라. 「정관」 개정의 건 ²⁾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마. 사내이사 후보 추천의 건 ³⁾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⁵⁾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자. 제 25 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심의/의결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차.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총무 관련 사항)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 평가, 점검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타. 퇴직임원 위로금 지급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2023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의 건							
나.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총무 관련 사항)							
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 보고의 건							
라. 2023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의 건							
마.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사. 기업가치 제고 방안 보고의 건 ⁶⁾							

- 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70만주)
- 2) 사업목적 정비, 등기이사 보수 결정권 명확화 등을 목적으로 정관 개정을 위한 부의
- 3) 김지산, 유경오 후보(신임)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주주총회에 부의
- 4) 이군희 이사(재선임), 유광열, 정주렴 후보(신임)의 사외이사 선임 건을 주주총회에 부의
- 5) 이군희 이사(재선임), 정주렴 후보(신임)의 감사위원 선임 건을 주주총회에 부의
- 6)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계획 보고

(라) 2024년도 제4차 (주주총회) 이사회 : 2024년 3월 28일 (10:30 ~ 11:00)

[안건통지일 : 2024년 3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1. 이사 성명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6/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정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의 건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이사 보수 결정 권한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마.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IT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 이사회 구성 변경 : 사외이사 김재식, 최선화 퇴임, 유광열, 정주렴 선임

- 1) 사외이사 이군희 이사회 의장 재선임
- 2)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규정」, 「보수위원회 규정」 개정 관련 사항 부의

(마) 2024년도 제5차 (정기) 이사회 : 2024년 5월 16일 (10:00 ~ 11:00)

[안건통지일 : 2024년 5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1. 이사 성명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신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투자컨텐츠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총무 관련 사항)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KFSQ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마.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총무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바.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상표권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사.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IT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IT 관련 사항)								
나. 2024년 1분기 실적 보고의 건								

다. 고난도상품승인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보고의 건

- 1) 여의도 TP Tower로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본점 소재지 변경
- 2)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에 따른 계약 체결

(바) 2024년도 제6차 (임시) 이사회 : 2024년 6월 28일 (11:00 ~ 11:20)

[안건통지일 : 2024년 6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1. 이사 성명	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6/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계열사 결성 펀드 출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원안 의결

(사) 2024년도 제7차 (정기) 이사회 : 2024년 8월 14일 (10:00 ~ 11:00)

[안건통지일 : 2024년 8월 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1. 이사 성명	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개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자기주식 취득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자기주식 소각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마. 키움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의 건 ²⁾	찬성	원안 의결						
바.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후순위대출 취급 승인의 건 ³⁾	찬성	원안 의결						
사. KFSQ 재건축 관련 건물 처분의 건 ⁴⁾	찬성	원안 의결						
아. 자산 폐기/매각의 건	찬성	원안 의결						
자.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경영기획 관련 사항)	찬성	원안 의결						
차.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리테일 관련 사항)	찬성	원안 의결						
카.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IT 관련 사항)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IT 관련 사항)
나. 2024년 상반기 실적 보고의 건
다.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및 하반기 계획
라. 『2024년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내역 및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계획』 보고의 건

- 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취득: 35만주, 소각: 35만주)
- 2) 계열사인 '키움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 (발행금액 500억 중 490억)
- 3) 계열사인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후순위대출 취급을 승인 (대출규모 USD 1,800만)
- 4) 본사 재건축에 따른 건물 처분 관련 사항 부의

(아) 2024년도 제8차 (임시) 이사회 : 2024년 10월 14일 (09:30 ~ 10:00)

[안건통지일 : 2024년 10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1. 이사 성명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계열사 결성 펀드 출자)	찬성	원안 의결						
나. 채무조정 내부기준 제정의 건	찬성	원안 의결						

(자) 2024년도 제9차 (정기) 이사회 : 2024년 11월 21일 (09:30 ~ 10:30)

[안건통지일 : 2024년 11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1. 이사 성명	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및 세부 지침(7종)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2025년 ELS/ELB/DLS/DLB 발행한도 설정 및 일괄신고서 제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2025년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ETN)) 발행한도 설정 및 일괄신고서 제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마. 무보증 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바. 안전 및 보전에 관한 실적-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사.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총무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아.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투자컨텐츠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자.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IT 관련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2024년 3분기 실적 보고의 건								

1) 위험관리책임자(CRO)의 이사회에 대한 직접 보고체계 규정 및 참석 권한 부여

(차) 2024년도 제10차 (임시) 이사회 : 2024년 12월 18일 (08:30 ~ 09:30)

[안건통지일 : 2024년 12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1. 이사 성명	임주성	김지산	유경오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7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FY2024 배당 실시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키움캐피탈(주) 기업어음 한도거래 부여 승인의 건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에 관한 사항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채무조정 내부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마. 계열사와 회사 간의 거래 (계열사 결성 펀드 출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해외계열사 사업계획 보고의 건 ⁴⁾								

- 1) 정관에 따른 배당 기준일(12월 말일) 도래 전 예상 배당액을 공시하기 위한 의결. 주주 시점에서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자회사의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어음 한도 매입 설정
(스트레스 상황 가정 시 '25년 2분기부터 유동성 부족 예상)
-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 4)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사업 진행경과, 향후 계획, 실적 목표 관련 사항 보고

(3)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활동시간

(단위 : 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개최일자	2024.01.08.	2024.02.14.	2024.03.13.	2024.03.28.	2024.05.16.	2024.06.28.
사외	이군희	60	90	120	90	60	20
	박성수	60	90	120	불참	60	20
	유광열	선임 전	선임 전	선임 전	90	60	불참
	정주렴	선임 전	선임 전	선임 전	90	60	20
	신현준	60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김재식	60	90	불참	퇴임	퇴임	퇴임
	최선화	60	90	불참	퇴임	퇴임	퇴임
사내	엄주성	60	90	120	90	60	20
	김지산	선임 전	선임 전	선임 전	90	60	20
	유경오	선임 전	선임 전	선임 전	90	60	20
	박연채	60	90	120	사임	사임	사임
구분	회차	7차	8차	9차	10차	합계	출석률
	개최일자	2024.08.14.	2024.10.14.	2024.11.21.	2024.12.18.		
사외	이군희	60	30	60	60	650	100% (10/10)
	박성수	60	30	60	60	560	90% (9/10)
	유광열	60	30	60	60	360	86% (6/7)
	정주렴	60	30	60	60	380	100% (7/7)
	신현준	사임	사임	사임	사임	60	100% (1/1)
	김재식	퇴임	퇴임	퇴임	퇴임	150	67% (2/3)
	최선화	퇴임	퇴임	퇴임	퇴임	150	67% (2/3)
사내	엄주성	60	30	60	60	650	100% (10/10)
	김지산	60	30	60	60	380	100% (7/7)
	유경오	60	30	60	60	380	100% (7/7)
	박연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270	100% (3/3)

(4)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2024	2023	2022		2024	2023	2022
사외 이사	신현준	2022.12.27 ~2024.01.31.	100	100	100	100	99	100	96	100
	최선화	2021.03.29 ~2024.03.28.	89	67	100	100	99	100	96	100
	김재식	2021.03.29 ~2024.03.28.	86	67	92	100	99	100	96	100
	이군희	2022.03.28 ~현재	100	100	100	100	99	100	96	100
	박성수	2023.03.28. ~현재	90	90	90	-	97	100	94	-
	유광열	2024.03.28. ~현재	86	86	-	-	100	100	-	-
	정주렴	2024.03.28. ~현재	100	100	-	-	100	100	-	-
사내 이사	박연채	2022.03.28 ~2024.03.28.	97	100	92	100	99	100	96	100
	엄주성	2024.01.08. ~현재	100	100	-	-	100	100	-	-
	김지산	2024.03.28. ~현재	100	100	-	-	100	100	-	-
	유경오	2024.03.28. ~현재	100	100	-	-	100	100	-	-

주) 재직기간의 '현재'는 보고서 기준일인 2024년 말을 의미

출석률 재직평균 = 3개년 간의 (출석 이사회 수 / 출석대상 이사회 수)

찬성률 = (재임기간 중 원안찬성 안건 수 / 재임기간 중 표결에 참가한 안건 수)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키움증권은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이자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지원부서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에 이사회에 대한 내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구조, 운영, 역할과 책임 분야로 나누어 6개월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2024년 말 기준 4인 전원)가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키움증권의 이사회는 구조 측면에서 적절한 규모를 갖춘 가운데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잘 준수하고 있으며, 지원부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고, 충분한 회의시간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원은 성실히 회의와 토론에 참석하고,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업계의 동향과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표]

구분	문항	이사 A	이사 B	이사 C	이사 D	평균
구조	이사회는 충분한 토의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5	5	5	5.0
	견제가 가능한 인적 구성을 위해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는가?	5	5	5	5	5.0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5	5	5	5.0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5	5	5	5.0
	주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4	5	5	4.8

운영	관련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고 있는가?	5	5	5	5	5.0
	지원부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는가?	5	5	5	5	5.0
	필요시 의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영진에 요청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는가?	5	5	5	5	5.0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가능하도록 회의시간이 보장되고 있는가?	5	5	5	4	4.8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있는가?	5	5	5	5	5.0
역할과 책임	이사회 구성원은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가?	5	5	5	5	5.0
	이사 전원이 자료 검토를 통해 부의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5	5	5	5	5.0
	이사 전원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 및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5	5	5	5	5.0
	이사 전원이 업계의 동향과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가?	5	5	5	5	5.0
	이사 전원이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5	5	5	5	5.0

* 평가는 5점 만점(매우 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매우 미흡 1점)

* 6개월 이상 재임한 이사를 대상으로 설문 진행

(2)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등의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을 반영하여 향후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이근희 의장)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3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후보군 관리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외이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를 포함한 1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에 해당하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중 재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구분	직위	(위원)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군희	사외이사	위원장	2022.03.28	2025. 03. 정기주총일
박성수	사외이사	위원	2023.03.28	2025. 03. 정기주총일
엄주성	사내이사	위원	2024.03.28	2027. 03. 정기주총일

다. 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요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의거하여 후보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주요 주주 또는 외부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를 탐색하여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와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임원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2024년 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1명의 사외이사가 연임, 2명의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2명의 사외이사가 새로이 선임되었는데 외부자문기관에서 추천한 금융전문가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후보군 발굴 및 검증 등에 대해 2024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년 3월 13일 (09:50 ~ 10:00)

[안건통지일 : 2024년 3월 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군희	박성수	엄주성	
1. 위원 성명	이군희	박성수	엄주성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연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이군희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신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유광열, 정주렴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연임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이군희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신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유광열, 정주렴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평가를 실시한 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항목은 위원회의 구조, 역할, 운영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위원회 의사록을 서면으로 점검한 후, 간사와 지원부서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평가를 주도하되, 세부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2024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체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표]

구분	문 항	점 수
구조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적정 위원 수를 갖추고 있는가?	5
	사외이사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5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는가?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 특히, 위원 자신의 재임 추천에 의결권을 제한하였는가?	5
	지원부서는 위원회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는가?	4
	위원회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영진에 요청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는가?	5
	회의 시간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보장되고 있는가?	4
역할과 책임	위원회 구성원은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 및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가?	5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5
평 균		4.8

* 평가는 5점 만점(매우 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매우 미흡 1점)

* 각 위원회 지원부서에서 평가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사외이사 후보 이군희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 이군희

② 출생연도 : 1964년 3월 1일

③ 출신학교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졸업

Univ. of Missouri 통계학 석사/박사

④ 경력 : 1992.03 - 19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1996.09 - 1997.02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특별연구원

2003.03 - 2004.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2011.09 - 2012.08 Univ.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2018.09 - 2019.08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19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임교수

(나) 후보제안자 : 엄주성 대표이사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이군희 후보자는 서울대 계산통계학 학사, Univ. of Missouri 통계학 석/박사 과정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서울대 통계연구소 특별연구원,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Univ. of Houston 교환교수, Cal Poly. 교환교수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통계학 전공교수로서 다양한 지식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 사외이사로서의 충분한 역량과 독립성을 겸비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과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을 통해 추천 받은 후보자는 2024년 3월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충족

나)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충족

- 평가

후보자는 키움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지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1. 전문성

이군희 후보자는 서울대 계산통계학 학사, Univ. of Missouri 통계학 석/박사 과정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Univ. of Houston, California Polytech Univ. 등에서 강사, 교수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통계학 전공교수로서 다양한 지식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직무공정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성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는 바,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함에 있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후보자는 이전 회사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윤리성, 책임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정례회의,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3월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유광열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 유광열

② 출생연도 : 1964년 2월 2일

③ 출신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④ 경력 : 1986년 4월 ~ 2000년 8월 경제기획원, 재경부 사무관/서기관

2000년 9월 ~ 2004년 8월 OECD 이코노미스트

2004년 8월 ~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2006년 3월 ~ 2007년 4월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07년 4월 ~ 2008년 2월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

2008년 2월 ~ 2011년 2월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재경관

2011년 4월 ~ 2013년 4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2013년 4월 ~ 2014년 6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2016년 7월 ~ 2017년 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2017년 2월 ~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17년 11월 ~ 2020년 6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0년 12월 ~ 2023년 12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나) 후보제안자 : 엄주성 대표이사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유광열은 금융 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SGI서울보증 등 다양한 금융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또한 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을 통해 추천 받은 후보자는 2024년 3월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충족

나)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충족

- 평가

후보자는 키움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지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1. 전문성

유광열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경제학 박사 과정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오랜 기간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SGI서울보증 등의 금융관련기관에서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직무공정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 자격요건을 갖추 것을 요하는 바,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함에 있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후보자는 이전 회사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윤리성, 책임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정례회의,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3월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정주렴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 정주렴

② 출생연도 : 1977년 2월 12일

③ 출신학교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회계학 전공)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회계학 전공)

④ 경력 : 1999.11 ~ 2003.05 삼일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2003.05 ~ 2011.03 BAT Korea 이사

2017.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편집위원

한국세무학회 윤리위원회 위원

(나) 후보제안자 : 엄주성 대표이사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정주렴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 및 BAT Korea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회계 전문가로 당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와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을 통해 추천 받은 후보자는 2024년 3월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충족

나)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충족

- 평가

후보자는 키움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지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1. 전문성

정주령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 대학원 회계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삼일회계법인 및 BAT Korea에서 영업재무팀장, 회계팀장, 내부감사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와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공정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성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는 바,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함에 있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후보자는 이전 회사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윤리성, 책임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정례회의,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3월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 결과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며 이중 1명이 연임하였으며 연임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합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 여부	이사회 출석률	평가 여부
이군희	2022.03.28 ~ 2024.03. 정기주총일	연임	100%	내부 평판 우수

* 이사회 등 출석률의 산정 기간 : 연임 당시 사외이사 재임기간 ('22.03. ~ '24.03.)

(6)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사외이사로서의 2년간의 활동과 실적을 보았을 때 연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첨부]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격요건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외부자문기관과 주주로부터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금융,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분야에서 주주, 외부자문기관, 사외이사, 지원부서 등의 추천 경로를 통해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경제	1	33%	
경영	1	33%	
법률	1	33%	
합계	3	100%	

아.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지원부서 : 인사팀
- 조직구성 : 팀장 1명, 팀원 8명
- 지원내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 실무지원 업무 수행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임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 지원 및 제반 업무 등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이사회와 각 위원회별 ‘활동내역’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여부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김재식	3	2	-	-	1	1	2	2	-	-	-	-
최선화	3	2	2	1	-	-	-	-	-	-	-	-
이군희	10	10	7	7	-	-	2	2	1	1	-	-
신현준	1	1	-	-	1	1	1	1	-	-	-	-
박성수	10	9	7	7	-	-	1	0	1	1	2	2
유광열	7	6	-	-	5	5	1	1	-	-	2	2
정주렴	7	7	5	5	5	5	-	-	-	-	-	-

주) 상기 개최는 각 사외이사의 재임 임기 중 개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위원회 역시 각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가입대상 : 키움증권 임원 (국내소재 자회사 임원 포함)
- 보험료 : 61,651,000원 (2024.09.01~2025.08.31)
- 자기부담금 : 5천만원 / 1청구당
- 보상한도액 : 30,000,000,000원
- 담보위험 : 피보험자가 임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사고(면책조항)
 1. 피보험자가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2. 피보험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3.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4. 피보험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5. 피보험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사채 등 매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청구
 6. 아래에 기재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이익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가. 정치단체, 공무원 또는 거래선의 임원, 종업원 등(그들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가족 및 그들과 관계 있는 단체 등을 포함)
 - 나. 이익제공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제6호 가목 이외의 자
 7. 초년도(첫째년도)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8. 초년도(첫째년도)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법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및 이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과 같거나 관련되는 사실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9. 이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일 때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 비용
 12. 원자핵 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3. 아래에 대한 배상청구
 - 가. 신체장해
 - 나.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에 기인하는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 포함)
 - 다.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행위 등의 인격 침해

라.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함)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법인이 직접적이거나 다른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50%가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기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5. 다른 피보험자, 법인 또는 자회사(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되지 않는 자회사를 포함)가 제기하는 배상청구, 또는 다른 피보험자, 법인 또는 자회사가 관여하여 법인 또는 그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16.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총수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비율(특수관계인을 포함) 이상을 소유하는 자(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대주주」라고 함)로부터 제기된 배상 청구, 또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대주주가 관여하여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 소송에 관계없이 제기하는 배상 청구
17. 법인 이외의 타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또는 그러한 타법인의 임원인 신분을 이유로 기인하는 배상청구
18. 법인이 제 3자와 합병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자산 모두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9. 제3자가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0.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부담보 특별약관
21. 정부관련기관 보상제외 특별약관
22. 금융기관 전문직업서비스 보상제외 특별약관
23. 석면/곰팡이 보상제외 특별약관
24. 전쟁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25. 서기2000년 보상제외 특별약관
26. 부정부패 관련 보상제외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29. 15% 이상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부터의 배상청구 부담보 특별약관
30. 특허권 저작권 부담보 특별약관
31.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김재식	최선화	이군희	박성수	유광열	정주렴
AML 제도 교육 ('24. 02월)	30분	30분	30분	30분	선임 전	선임 전
AML 제도 교육 ('24. 05월)	-	-	30분	30분	30분	30분
AML 제도 교육 ('24. 08월)	-	-	30분	30분	30분	30분
AML 제도 교육 ('24. 11월)	-	-	30분	30분	30분	30분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 및 운영 트렌드	-	-	30분	30분	30분	30분
누적 (단위: 시간)	0.5	0.5	2.5	2.5	2.0	2.0

* 유광열, 정주렴 사외이사 : 3월 선임

* '2. 누적 교육 시간'은 당사 사외이사로 취임 후 2024년 동안 참석한 교육·연수시간 합산 기재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재식 (연도 중 퇴임)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사적 공적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우수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 업무 정상적 수행 가능

(2) 사외이사 최선화 (연도 중 퇴임)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 전문가,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사적 공적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우수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 업무 정상적 수행 가능

(3) 사외이사 신현준 (연도 중 퇴임)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사적 공적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우수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 업무 정상적 수행 가능

(4) 사외이사 이군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전문가,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사적 공적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우수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 업무 정상적 수행 가능

(5) 사외이사 박성수

심사항목	총족여부	총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총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총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총족	변호사
나. 직무공정성	총족	당사와 사적 공적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총족	평판 우수
라. 충실성	총족	사외이사 업무 정상적 수행 가능

(6) 사외이사 유광열

심사항목	총족여부	총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총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총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총족	경영 전문가,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총족	당사와 사적 공적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총족	평판 우수
라. 충실성	총족	사외이사 업무 정상적 수행 가능

(7) 사외이사 정주렴

심사항목	총족여부	총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총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총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 전문가,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사적 공적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우수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 업무 정상적 수행 가능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해당 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내·외부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사외이사별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2024년은 이군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인사팀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보조합니다. 팀장 1명, 팀원 8명으로 인사,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검증 및 위원회 소집 및 개최, 의안 작성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신현준

(가) 재직기간 : 2022.12.27 ~ 2024.01.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가. 보수총액		400만원	(2024년)
	기본금	350만원	350만원 x 1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50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2) 사외이사 김재식

(가) 재직기간 : 2021.03.29 ~ 2024.03.28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가. 보수총액		1,300만원	(2024년)
	기본금	1,200만원	400만원 x 3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최선화

(가) 재직기간 : 2021.03.29 ~ 2024.03.28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가. 보수총액		1,150만원	(2024년)
	기본금	1,050만원	350만원 x 3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4) 사외이사 이군희

(가) 재직기간 : 2022.03.28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가. 보수총액		6,675만원	(2024년)
	기본금	6,225만원	450만원 x 3개월 541.6만원 x 9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450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5) 사외이사 박성수

(가) 재직기간 : 2023.03.28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항 목	금 액
가. 보수총액		5,575만원	(2024년)
	기본금	5,175만원	350만원 x 3개월 458.3만원 x 9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400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6) 사외이사 유광열

(가) 재직기간 : 2024.03.28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항 목	금 액
가. 보수총액		4,484만원	(2024년)
	기본금	4,184만원	59.1만원 x 1개월 458.3만원 x 9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300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6) 사외이사 정주렴

(가) 재직기간 : 2024.03.28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항 목	금 액
가. 보수총액		4,484만원	(2024년)
	기본급	4,184만원	59.1만원 x 1개월 458.3만원 x 9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300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박성수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이 있으나, 당사 관련 자문 중 박성수 사외이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당사 관련 자문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외이사로서 상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24년 12월 말 기준)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이순우	'20.03.25	'23.03.28	3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장 ('21.03.~'23.03.) 보수위원장 ('20.03.~'21.03.)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재식	'21.03.29	'24.03.28	3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보수위원장 ('21.03.~'24.03.)	㈜에트라스 대표이사
이석환	'21.03.29	'22.12. 사임	1년 9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추위원장 ('21.03.~'22.12.)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최선화	'21.03.29	'24.03.28	3년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장 ('22.03.~'24.03.) 리스크관리위원장 ('24.01.~'24.03.) ESG위원장 ('21.08.~'24.0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이군희	'22.03.28	'25.03. 정기주총일	2년 9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이사회 의장 ('24.01.~현재) 임추위원장 ('22.12.~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현준	'22.12.27	'24.01. 사임	1년 1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장 ('23.03.~'24.01.)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박성수	'23.03.28	'25.03. 정기주총일	1년 9개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보수위원장 ('24.0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유광열	'24.03.28	'26.03. 정기주총일	9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ESG위원장 ('24.03.~현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정주렴	'24.03.28	'26.03. 정기주총일	9개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장 ('24.03.~현재) 리스크관리위원장 ('24.03.~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8월 7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 내부규범 내에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 제5조에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에서 명시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에 부합할 것, 당사 임원 직제 및 처우규정 제6조에 부합 할 것을 최소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 지속적인 후보자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격요건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외부자문기관과 주주로부터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부터 최단 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먼저 정관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경영승계 사유, 개시일자,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결정하고, 임원후보추천위의 후보군 보고 및 최종후보 확정, 후보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주주총회 개최, 이후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충족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 : 충족

평가 : 당사 대표이사는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비전과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윤리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경영혁신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자'를 적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해당 요건 충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 자격요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나) 임원으로서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평가 : 당사 대표이사는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황현순 대표이사는 2023년 3월 28일 개최된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고, 황현순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13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 2023년 3월 28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결의하였습니다.

황현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엄주성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8일 개최된 제1차 이사회

의결로 엄주성 대표이사를 2024년 1월 8일자로 신규 선임함으로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엄주성 대표이사 후보자는 30년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였고 타 증권사 및 키움증권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으며, 금융투자업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자격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는 2016년 8월 18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자격 및 추천과 관련하여 동 사규 제35조와 제3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 및 사규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관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자격 검증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 분		후보군 수	백분율
내 부		4	100%
외 부	금융회사	-	-
	비금융회사	-	-
	공공기관	-	-
합 계		4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최고경영자	4	100%
이사회	-	-
주주	-	-
외부기관	-	-
합계	4	100%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정성 점검은 담당업무 지원부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전반에 문제가 없으며, 2022년 황현순 대표이사로의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및 황현순 대표이사의 2023년 대표이사 사임 표명에 따른 2024년 엄주성 대표이사로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또한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담당업무 지원부서는 인사팀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실무를 보조하며 팀장 1명, 팀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 (권한과 책무)

(1) 총괄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감사총괄임원은 총 10회의 이사회 안건 전부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특이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에 따라 2024년 2월에 소집된 2024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에는 제25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지원부문장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재무 및 업무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① 외부감사인 선정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외감법 제10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회사의 'FY2023 ~ FY2025' 3개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22년 제7차 감사위원회) 하였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목표 및 주요 고려사항, 감사 수행절차 및 일정, 감사결과 유의적 발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감독·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도 2차 회의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평가항목은 ① 감사품질(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내용 대비 감사시간·인력·보수·계획 등의 충실한 이행 여부), ②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감사위원회 앞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이 높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것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세무업무'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통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총괄임원에게 위임하며, 감사총괄임원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실사·입회·조회·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제2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2024년도 제1차 (2월 개최)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으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고받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기타

키움증권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9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년도 제1차 (2월 개최)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Compliance 문화 정착 교육 활동
- 재산상 이익의 제공·수령 현황
- 불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 자금세탁방지 관련 대내·외 보고 및 활동
- 법무 지원 및 소송 진행 등
- 2024년 내부통제 계획 등

나. 구성 (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정관 제4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주주거나 당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키움증권의 감사위원회는 3명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정주렴 감사위원,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이근희 감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및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 재직중인 박성수 감사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주렴 감사위원은 회계학 전공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및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학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바,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2) 구성원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구분	직위	(위원)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주렴*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4.03.28	2026.정기주총일
이군희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2.03.28	2025.정기주총일
박성수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3.03.28	2025.정기주총일

* 2024년 3월 28일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임기만료)

- 사외이사 최선화 → 사외이사 정주렴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7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등 28건의 안건이 보고 및 부의되었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참석한 감사위원들의 전원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록은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정기)감사위원회 : 2024년 2월 14일 (09:00 ~ 10:00)

[안건통지일 : 2024년 2월 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최선화	이군희	박성수	
1. 위원 성명	최선화	이군희	박성수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FY202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수정제출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감사부서장 임명 동의의 건 ²⁾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2024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³⁾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외부감사인인 2023년 기말감사 경과보고 및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⁴⁾				
나. FY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 제출의 건 ⁵⁾				
다.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⁶⁾				
라. 2023년 내부통제활동 및 2024년 계획 보고의 건 ⁷⁾				
마. 2023년 4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⁸⁾				
바. 2023년 감사결과 보고의 건 ⁹⁾				

- 1) FY2020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재보고
- 2) 내부 감사부서장 임명 사항
- 3) 2024년 연간 감사운영 방향 및 실시계획을 승인
- 4) 삼정회계법인이 2023년도 기말감사 진행경과 보고
- 5) FY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 보고
- 6)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및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7) 2023년 내부통제활동 점검 결과 및 2024년 준법감시 계획 보고
- 8) 4분기 내부감사 실시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 보고
- 9) 2023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 보고

(나) 2024년도 제2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4년 3월 13일 (09:00~09:50)

[안건통지일 : 2024년 3월 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최선화	이군희	박성수	-
2. 참석 여부	불참	참석	참석	2/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비감사업무 사전승인 정책의 승인의 건 ¹⁾	불참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²⁾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다.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³⁾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⁴⁾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마. 2023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의 건 ⁵⁾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바.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 건 ⁶⁾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외부감사인의 2023년 기말 감사결과 및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⁷⁾				

- 1)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 정책 및 사전 승인 가능한 비감사업무 승인
- 2) 삼정회계법인의 2023년 감사활동 및 계약이행,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결과 승인
- 3)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적정성,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적합성, 영업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
- 5) 2023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보고
- 6) 내부감시장치의 운영 현황, 효과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
- 7) 삼정회계법인이 실시간 2023년도 기말감사 결과 보고

(다) 2024년도 제3차 (정기)감사위원회 : 2024년 5월 16일 (09:00 ~ 10:00)

[안건통지일 : 2024년 5월 10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1. 위원 성명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¹⁾	-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외부감사인의 2024년 1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²⁾				
나.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³⁾				
다. 2024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 1) 2024년 3월 28일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임기만료)
 - 사외이사 최선화 → 사외이사 정주렴
- 2) 삼정회계법인이 실시한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3)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등에 대한 계획 보고
- 4) 1분기 내부감사 실시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 보고

(라) 2024년도 제4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4년 6월 28일 (11:30 ~ 12:00)

[안건통지일 : 2024년 6월 2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감사부서장 임명 동의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1) 내부 감사부서장 임명 사항

(마) 2024년도 제5차 (정기)감사위원회 : 2024년 8월 14일 (09:00 ~ 10:00)

[안건통지일 : 2023년 8월 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감사부서장 임명 동의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외부감사인인 2024년 반기 검토결과 및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²⁾				
다. 2024년 2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³⁾				

1) 내부 감사부서장 임명 사항

2) 삼정회계법인이 실시한 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3) 2분기 내부감사 실시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 보고

(바) 2024년도 제6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4년 10월 14일 (10:00 ~ 10:15)

[안건통지일 : 2024년 10월 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1. 위원 성명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감사부서장 임면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사) 2024년도 제7차 (정기)감사위원회 : 2024년 12월 18일 (09:30 ~ 10:00)

[안건통지일 : 2024년 12월 1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1. 위원 성명	정주렴	이군희	박성수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2025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4. 보고 안건				
가. 외부감사인의 2024년 3분기 검토결과 보고 및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²⁾				
나. 2024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³⁾				

1) 2025년 연간 감사운영 방향 및 실시계획을 승인

2) 삼정회계법인이 실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3) 3분기 내부감사 실시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 보고

※ 개별 이사 출석 내역 및 활동시간

(단위 : 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합계
	개최일자	2024.02.14	2024.03.13	2024.05.16	2024.06.28	2024.08.14	2024.10.14	2024.12.18	
사외 이사	정주렴	선임 전		60분	30분	60분	15분	30분	총 195분
	이군희	60분	50분	60분	30분	60분	15분	30분	총 305분
	박성수	60분	50분	60분	30분	60분	15분	30분	총 305분
	최선화*	60분	불참	임기만료					총 60분
사내 이사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임기만료)

- (2024.03.28.) 사외이사 최선화 → 사외이사 정주렴

※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기간	재직평균	출석률 (%)		
				최근 3개년		
				2024	2023	2022
사외이사	정주렴*	2024.03.28~현재	100%	100%	선임 전	
사외이사	이군희	2022.03.28~현재	100%	100%	100%	100%
사외이사	박성수	2023.03.28~현재	100%	100%	100%	선임 전
사외이사	최선화*	2021.03.29~2024.03.28	83%	50%	100%	100%

*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임기만료)

- (2024.03.28.) 사외이사 최선화 → 사외이사 정주렴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위원회 의사록을 서면으로 점검한 후, 간사와 지원부서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평가를 주도하되, 세부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표]

구분	문항	점수
구조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적정 위원 수를 갖추고 있는가?	5
	3인 이상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가?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을 갖추고 있는가?	5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5
	지원부서는 위원회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는가?	5
	위원회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영진에 요청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는가?	5
	회의 시간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보장되고 있는가?	4
역할과 책임	위원회 구성원은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 및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가?	5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5
평 균		5.0

* 평가는 5점 만점(매우 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매우 미흡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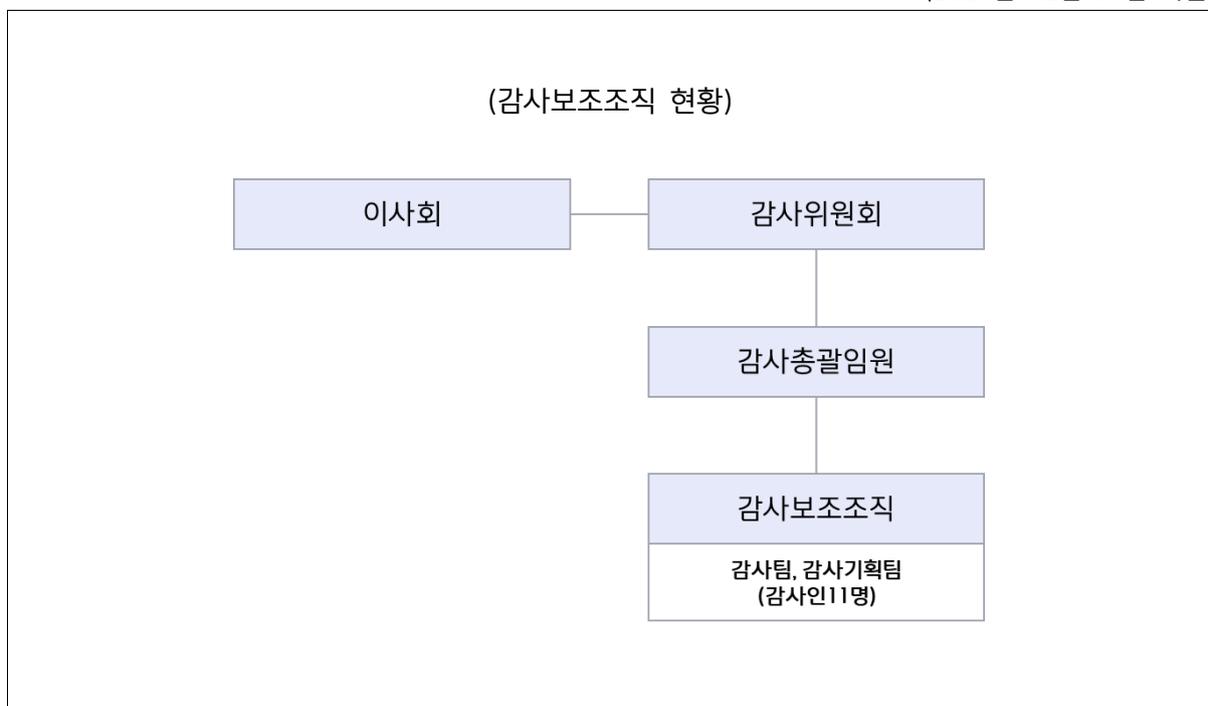
* 각 위원회 지원부서에서 평가

라. 감사보조조직 등

키움증권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팀과 감사기획팀을 두고 있으며, 감사보조조직의 직원(이하 ‘감사인’)은 대표이사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인력을 풀타임 계약직 감사인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9조).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감사위원회 보고 및 지원 현황]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4.02.14	감사위원회	2023년 감사결과 보고 등
2024.03.13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등
2024.05.16	감사위원회	2024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등
2024.08.14	감사위원회	2024년 2분기 감사결과 보고 등
2024.12.18	감사위원회	2025년 감사업무 계획 등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 (권한과 책무)

(1) 총괄

키움증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사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의 총괄적인 감독 및 효율적인 통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사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그 권한을 적정하게 위임 받아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는 경영상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회사 리스크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수익 극대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키움증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제정한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관련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승인 및 이의 유효성 점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28일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제26기 목표NCR, Stressed NCR, 유동성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관리한도 설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초 목표NCR, Stressed NCR 및 유동성관리한도 설정을 통하여 회사가 부담 가능한 전체 위험수준을 결정·통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순자본비율인 목표NCR을 200%로 설정하여 회사의 전사위험자본한도를 산출하였습니다.

또,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목표NCR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예상손실금액을 반영한 순자본비율인 Stressed NCR 한도를 설정하였고, 원화 및 외화 유동성비율과 유동성 갭 한도를 설정하여 전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1,000%로 설정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설정 한도 이내에서 영업 부문별 포지션을 배분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 설정은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을 통해 분기별 위험자본의 한도 소진율 등 소속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점검하였으며, 2024년 11월 21일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2025년 그룹 위험한도의 설정 및 배분의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당사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전사위험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위험자본한도 배분 및 이에 따른 각종한도 배분'을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에서는 2024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한 전사위험자본 한도 내에서 운용BOOK별 위험자본한도 및 이에 따른 투자 한도, 손실 한도, 민감도 한도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내역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에는 총 4회의 분기별 한도 내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및 이하 리스크별(시장, 신용, 유동성, 종합, 운영 및 법률 등) 관리지침에 대하여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정한 개별 지침의 경우 제·개정 권한을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상기 역할 외에도 당사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품(신규 거래)의 승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시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16일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결의하였고, 「에퀴티솔루션팀 ARS관련 신상품 승인의 건」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4일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Skew Swap 거래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고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인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하여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정주렴, 유광열 사외이사, 유경오 사내이사가 새로운 리스크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위원인 최선화, 김재식 사외이사, 엄주성 사내이사는 2024년 3월 28일 리스크관리위원직을 퇴임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금융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2024년 중 재임하였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성명	구분	직위	(위원)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주렴	사외이사	위원장	2024.03.28	2026. 03.
유광열	사외이사	위원	2024.03.28	2026. 03.
유경오	사내이사	위원	2024.03.28	2026. 03.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변경

2024. 01. 08. : 사내이사 황현순(사임) → 사내이사 엄주성

2024. 01. 31. : 사외이사 신현준(사임) → 사외이사 최선화

2024. 03. 28. 주총이사회 : 사외이사 최선화, 김재식 → 사외이사 정주렴, 유광열
 사내이사 엄주성 → 사내이사 유경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100% 참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의결안건 7개, 보고안건 11개로 총 18개였으며 7개의 의결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년 1월 8일 (11:25 ~ 11:35)

[안건통지일 : 2024년 1월 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신현준	김재식	엄주성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위원 변경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년 3월 28일 (11:00 ~ 11:50)

[안건통지일 : 2024년 3월 26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정주렴	유광열	유경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6기 목표NCR, Stressed NCR, 유동성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관리한도 설정의 건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리스크관리 제25기 4분기 보고의 건				
나. 금융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4분기 보고의 건				
다. 키움베트남사모부동산신탁 제2호 사후보고의 건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변경

2024. 01. 31. : 사외이사 신현준(사임) → 사외이사 최선화

2024. 03. 28. 주총이사회 : 사외이사 최선화, 김재식 → 사외이사 정주렴, 유광열

사내이사 엄주성 → 사내이사 유경오

1) 목표NCR(순자본비율) 등 전사위험자본한도의 영업부문별 배분 및 관리

(다) 2024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년 5월 16일 (09:40 ~ 10:00)

[안건통지일 : 2024년 5월 1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정주렴	유광열	유경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보고 안건				
가. 리스크관리 제26기 1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제26기 1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라) 2024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년 7월 16일 (09:00 ~ 09:30)

[안건통지일 : 2024년 7월 1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정주렴	유광열	유경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가결
나. 에퀴티솔루션팀 ARS관련 신상품 승인의 건				가결

(마) 2024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년 8월 14일 (09:30 ~ 10:20)

[안건통지일 : 2024년 8월 1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정주렴	유광열	유경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Skew Swap 거래 승인의 건				가결
4. 보고 안건				
가. 리스크관리 제26기 2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제26기 2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다.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 보고의 건

(바) 2024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년 11월 21일 (10:30 ~ 11:20)

[안건통지일 : 2024년 11월 1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정주렴	유광열	유경오	
1. 위원 성명	정주렴	유광열	유경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25년 그룹 위험한도 설정 및 배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리스크관리 제26기 3분기 보고서 보고의 건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분기보고서 보고의 건				
다. 24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의 건				

※ 개별 이사 출석 내역 및 활동시간

(단위 : 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개최일자	2024.01.08	2024.03.28	2024.05.16	2024.07.16	2024.08.14	2024.11.21	
사외이사	신현준	10	퇴임					10
	김재식	10	퇴임					10
	최선화		퇴임					-
	정주렴	-	50	20	30	50	50	200
	유광열	-	50	20	30	50	50	200
사내이사	황현순		퇴임					-
	엄주성*	10	퇴임					10
	유경오	-	50	20	30	50	50	200

※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24	2023	2022
사외이사	신현준	2024.01.01. ~ 2024.01.31.	100%	100%	100%	-
사외이사	김재식	2024.01.01. ~ 2024.03.28.	100%	100%	100%	100%
사외이사	최선화	2024.01.31. ~ 2024.03.28.	100%	-	-	-
사외이사	정주렴	2024.03.28. ~ 현재	100%	100%	-	-
사외이사	유광열	2024.03.28. ~ 현재	100%	100%	-	-
사내이사	황현순	2024.01.01. ~ 2024.01.08.	100%	-	100%	100%
사내이사	엄주성	2024.01.08. ~ 2024.03.28.	100%	100%	-	-
사내이사	유경오	2024.03.28. ~ 현재	100%	100%	-	-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변경

2024. 01. 08. : 사내이사 황현순(사임) → 사내이사 엄주성

2024. 01. 31. : 사외이사 신현준(사임) → 사외이사 최선화

2024. 03. 28. 주총이사회 : 사외이사 최선화, 김재식 → 사외이사 정주렴, 유광열
사내이사 엄주성 → 사내이사 유경오

(3) 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평가를 실시한 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 항목은 위원회의 구조, 역할, 운영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위원회 의사록을 서면으로 점검한 후, 간사와 지원부서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평가를 주도하되, 세부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2024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표]

구분	문항	점수
구조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적정 위원 수를 갖추고 있는가?	5
	사외이사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5
	1인 이상의 금융회사 종사 경험이 있는 위원을 갖추고 있는가?	5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4
	지원부서는 위원회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는가?	5
	위원회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영진에 요청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는가?	5
	회의 시간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보장되고 있는가?	5
역할과 책임	위원회 구성원은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 및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가?	5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5
평 균		4.9

* 평가는 5점 만점(매우 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매우 미흡 1점)

* 각 위원회 지원부서에서 평가

8. ESG위원회

가. 역할 (권한과 책무)

(1) 총괄

키움증권 ESG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과 정책을 승인하고, 이행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키움증권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2021년 8월 19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었으며, 당사 「ESG위원회 규정」에 따른 권한과 역할을 부여 받아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ESG위원회는 ① 당사의 연간 ESG 전략 및 추진계획을 승인합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당사의 ESG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② 당사의 ESG 활동과 성과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ESG 업무수행 부서로부터 당사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위원회의 과반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는 당사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ESG 관련 상품 및 투자에 관하여 중요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뤄질 ESG 채권 발행, 관련 투자에 관하여 ESG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나. 구성 (ESG위원회 위원)

(1) 총괄

ESG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인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구분	직위	(위원) 선임일	임기 만료일
유광열	사외이사	위원장	2024.03.28.	2026. 03. 정기주총일
박성수	사외이사	위원	2023.03.28.	2025. 03. 정기주총일
김지산	사내이사	위원	2024.03.28.	2026. 03. 정기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중 ESG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100% 참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결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ESG위원회 : 2024년 5월 16일 (09:30 ~ 09:40)

[안건통지일 : 2024년 5월 1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유광열	박성수	김지산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

				여부
가.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브랜드 가치 제고 실행과제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원안 의결

(나) 2024년도 제2차 ESG위원회 : 2024년 11월 21일 (10:50 ~ 11:00)

[안건통지일 : 2024년 11월 1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유광열	박성수	김지산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보고 안건				
가. 2024년 ESG 활동내역 및 2025년 계획 보고				

※ 개별 이사 출석 내역 및 활동시간

(단위 : 분)

구분	회차	1차	2차	합계
	개최일자	2024.05.16	2024.11.21	
사외이사	유광열	10	10	20
	박성수	10	10	20
사내이사	김지산	10	10	20

※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24	2023	2022
사외이사	유광열	2024.03.28. ~ 현재	100%	100%	-	-
사외이사	박성수	2023.03.28. ~ 현재	100%	100%	100%	-
사내이사	김지산	2024.03.28. ~ 현재	100%	100%	-	-

(3) 평가

키움증권은 ESG위원회가 설치의 목적에 따라 기능하고, 내규로 정한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당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매년 2월 평가를 실시한 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평가 항목은 위원회의 구조, 역할, 운영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위원회 의사록을 서면으로 점검한 후, 간사와 지원부서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평가를 주도하되, 세부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2024년도 ESG위원회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SG위원회 평가표]

		항 목	점 수
구조	1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적정 위원 수를 갖추고 있는가?	4
	2	사외이사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5
	3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는가?	5
	4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4.5
운영	1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5
	2	지원부서는 위원회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는가?	4.5
	3	위원회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영진에 요청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는가?	4
	4	회의 시간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보장되고 있는가?	4
역할과 책임	1	위원회 구성원은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가?	5
	2	위원 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4.5
	3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 및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가?	4
	4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5
		평 점	4.5

* 평가는 5점 만점(매우 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매우 미흡 1점)

* 각 위원회 지원부서에서 평가표 작성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역할 (권한과 책무)

키움증권의 보수체계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의 조화를 통해 당사가 금융회사로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설계·운영하는 것을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서 상기 철학이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과 「성과보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 규정」 제7조 제5항 마목을 근거로 하여 2013년 5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는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준희 사외이사는 2024년 1월 31일에 박성수, 유광열 사외이사는 2024년 3월 28일에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보수위원회 위원)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3인 이상의 등기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박성수, 이군희, 유광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박성수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광열 사외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외이사로 보수위원회가 회사와 관련한 재무적 내용 및 리스크 관리 측면 모두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 12. 31. 기준)

성명	직명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박성수	사외이사	X	X	· 수원, 서울, 대전 지방법원 판사 · 총괄국제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법 부장판사 · 김·장 법률사무소
이군희	사외이사	X	O	·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특별연구원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전임교수
유광열	사외이사	O	O	·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2) 구성원

(2024. 12. 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성수	사외	위원장	'23.03.28. (신규)	'25년 정기주총일
이군희	사외	위원	'24.03.28. (연임)	'25년 정기주총일
유광열	사외	위원	'24.03.28. (신규)	'26년 정기주총일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 용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총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 공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성과보수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으며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정의, 이연지급비율, 이연지급기간 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당시 심의되었던 큰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당사 내부규정인 보수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제·개정(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변경 등 단순 변경사항 제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합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사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은 한국에 있는 키움증권 내 모든 조직 및 해외사무소에 적용됩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의 「성과보수규정」 제2조 및 제9조는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과거 성과보수규정을 적용한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자인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 12. 31.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44명	대표이사, 부문장 등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30명	IB부문 인력 등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박성수 이사)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사전 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2024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4년도에 총 3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4년 1월 8일 (11:30 ~ 11:40)

[안건통지일 : 2024년 1월 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김재식	엄주성	신현준	
1. 위원 성명	김재식	엄주성	신현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여부
가. 성과보수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의결

(나) 2024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4년 2월 14일 (11:30 ~ 11:40)

[안건통지일 : 2024년 2월 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재식	엄주성	이군희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3/3
3. 의결 안건				가결여부
가. '23년도 성과보수규정 적용 및 상시점검 결과 ¹⁾	찬성	찬성	찬성	원안의결
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보수체계 및 보수위원회 부분) 승인 ²⁾	찬성	찬성	찬성	원안의결
다. '24년도 성과보수지침 수립 ³⁾	찬성	찬성	찬성	원안의결

1) 성과보수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의 및 상시점검 실시

2)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부분을 승인

3) 2024년 이연비율, 기간, 대상 등 성과보수규정 지침 수립함

(다) 2024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4년 3월 28일 (11:20 ~ 11:30)

[안건통지일 : 2024년 3월 2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성수	이군희	유광열	-
2. 참석 여부	불참	참석	참석	2/3
3. 의결 안건				가결여부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	찬성	찬성	원안의결
나. 대표이사 보수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원안의결

(4)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평가를 실시한 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평가 항목은 위원회의 구조, 역할, 운영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위원회 의사록을 서면으로 점검한 후, 간사와 지원부서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평가를 주도하되, 세부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2024년 보수위원회는 대체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수위원회 평가표]

구분	문 항	점 수
구조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적정 위원 수를 갖추고 있는가?	5
	사외이사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5
	리스크관리위원 1 인 이상을 포함하고, 1 인 이상의 금융회사 종사 경험이 있는 위원을 갖추고 있는가?	5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5
	지원부서는 위원회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는가?	5
	위원회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영진에 요청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는가?	5
	회의 시간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보장되고 있는가?	4
역할과 책임	위원회 구성원은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5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 및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가?	5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5
평 균		4.8

* 평가는 5점 만점(매우 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매우 미흡 1점)

* 각 위원회 지원부서에서 평가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성과측정 지표로 재무적 지표를 사용하며, 금융투자업무담당 본부별로는 성과보수 산정을 위하여 '성과급 대상 손익'을 사용합니다. 성과급 대상 손익은 영업수지에서 직접비(인건비, 조사연구비, 지급수수료 등)와 간접비(리서치센터 비용, 자금비용, 리스크비용, 리스크패널티 등)를 제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간접비 중 리스크비용의 경우 거래별(Deal별) 리스크 수준을 차등화 하여 적용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 개인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영업수지·이익) 등과 그에 대한 기여도를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합니다. 단 감사총괄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회사의 재무적 성과로부터 독립된 직무수행이 필요한 임원은 「임원 직제 및 처우 규정」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아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급 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단위 부서 성과급 대상 손익과 기여도 등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재무성과(영업수지·이익) 등을 지표로 하여 개인의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소속부서의 성과급 대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재원을 산출하고, 개인별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의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당사는 성과보수의 총액이 회사 전체의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자본적정성 또한 개인의 보수와 잘 연동되도록 당사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매년 성과보수지침 적용 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배분금액 중 40%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 회사 주가와 연계한 현금(이하 “주가연계현금”)으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연지급 기간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투자 존속기간 및 위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 「성과보수규정」은 보수위원회에 이연비율 및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였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에 대하여 당사 「성과보수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임원은 3년간 이연지급되는 보수를 주가연계현금으로 받으므로, 그 보수액은 ‘주식 수’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일 이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라 이연보수액이 미확정 상태로 유지되며, 지급시점에 이르러 주가를 반영함으로써 지급될 금액이 확정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반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성과연봉 또는 경영목표를 초과한 실현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를 변동보수로 분류합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추가연계현금과 현금으로 구별됩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변동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동되도록 연간 성과보수총액의 40% 이상을 추가연계현금으로 이연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부동산 외 업무 담당은 40% 이상, 부동산 업무담당은 성과보수총액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동되도록 성과보수액의 40% 이상을 추가연계현금 형태로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투자성 존속기간 및 위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외 업무담당은 40%, 부동산 업무담당은 50%를 현금보수로 3년간 이연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의 일반직원은 「급여복지규정」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합니다. 영업 및 관련 직원에게는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관리 및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익 및 인사평가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직원 또한 전사적 성과와 인사평가의 내용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상여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및 관련부서의 직원 또한 성과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사용 연차휴가 매 1일에 통상급여 100%지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인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4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금지

당사는 「성과보수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임직원이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성과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억원)

구 분	임직원 보수총액(A) ¹⁾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A/C)
			비율(A/B)		
직전연도(2023년)	965.2	4,509.2	21.41%	884명	1.09
당해연도(2024년)	1,116.5	10,902.8	10.24%	994명	1.12

주)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 분		경영진	직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직전연도 (2023년)	보수총액	135.7	138.3	173.9	148.5	163.7	205.3
	성과보수액	58.2	55.1	61.2	43.8	44.6	54.5
당해연도 (2024년)	보수총액	182.3	191.6	190.1	177.1	178.4	196.9
	성과보수액	89.7	96.9	75.3	53.5	47.3	42.8

주)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수급자수 ¹⁾	기본급	성과보수액		
			이연지급대상		
직전연도 (2023년)	임원	35명	58.0	125.4	59.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01명	76.0	145.2	58.1
당해연도 (2024년)	임원	44명	74.3	183.0	76.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30명	97.8	195.0	86.6

1) 해당 연도 중 6개월 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¹⁾	추가연계 현금 ²⁾	기타 ³⁾	
직전연도 (2023년)	임원	125.4	66.3	-	59.2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45.2	145.2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183.0	106.4	-	76.6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95.0	195.0	-	-	-

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2) 추가연계현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발생 연도 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1), 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추가연계현금' 으로 기재

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추가연계현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 연도 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¹⁾		
			지급확정 ²⁾	지급미확정 ²⁾
직전연도 (2023년)	임원	110.6	31.6	79.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81.6	67.6	114.0
당해연도 (2024년)	임원	164.5	50.8	113.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98.1	63.7	134.4

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추가연계현금으로 지급하는 임원의 경우 지급 미확정금액은 작성기준 대상 연도의 기준주가로 계산하여 작성.

3) T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T년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 (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 연도 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추가연계 현금	기타	
직전연도 (2023년)	임원	110.6	-	-	110.6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81.6	181.6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164.5	-	-	164.5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98.1	198.1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단위 :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직전연도 (2023년)	임원	110.6	50.2	23.2	30.7	6.6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81.6	58.1	27.3	71.0	25.2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164.5	73.4	55.4	18.3	17.3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98.1	86.6	57.0	18.9	35.7	-

주) 해당 연도 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t년 기준 누적된 이연보수액은 t년 발생분, t-1년 발생분, t-2년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⁴⁾
		축소액 ¹⁾	직접적 조정 ²⁾	간접적 조정 ³⁾	
직전연도 (2023년)	임원	0.6	1.4	(0.7)	110.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9	1.9	-	181.6
당해연도 (2024년)	임원	(4.3)	0.1	(4.4)	164.5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4	0.4	-	198.1

1) 해당년 직전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단,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음에도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해당 연도 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외 퇴직보수 지급: 해당사항 없음

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 관

(2024. 03. 28. 개정)

키움증권주식회사

(주주총회)

2000년 1월 31일 제 정
2000년 5월 26일 개 정
2002년 5월 31일 개 정
2003년 5월 23일 개 정
2004년 5월 28일 개 정
2005년 5월 27일 개 정
2006년 5월 26일 개 정
2007년 5월 25일 개 정
2008년 5월 30일 개 정
2009년 5월 29일 개 정
2010년 5월 28일 개 정
2011년 5월 27일 개 정
2012년 5월 25일 개 정
2013년 5월 31일 개 정
2014년 3월 14일 개 정
2017년 3월 24일 개 정
2018년 3월 22일 개 정
2019년 3월 26일 개 정
2024년 3월 28일 개 정

제1장 총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라 한다, (약호 : 키움증권))라 하며, 영문으로는 KIWOOM Securities Co.,Ltd. (약호 : KIWOOM)로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4.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법령,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보고 등 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및 그에 겸영·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iwoom.com/>)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며,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그리고 발행할 종류주식의 종류, 수, 존속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되, 종류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무기한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년도의 이익으로써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부족액을 차기 영업년도의 이익으로써 누적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 제⑤항의 규정은 제9조의3, 제9조의4의 각 종류주식에도 적용한다.

제9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설립 또는 인·허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된 종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상환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종류주식을 상환기간 중 주주가 청구하는 때에 회사가 상환하는 것으로 하거나 회사가 상환기간 중 이사회 결의로 상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 시 상환하여야 하는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⑥ 회사는 이 조의 종류주식을 제9조의4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경우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경우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주식병합 또는 합병·분할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전환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또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및 선진 금융기법 전수,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8. 05. 30.>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제3항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19.03.26)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8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이하 이 조에서

-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함)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9. 03. 26.>

제18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또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및 선진 금융기법 전수,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상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내외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또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및 선진 금융기법 전수,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상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내외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의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1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21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특별히 정하지 않을 시에는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1절 이사

제35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36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3. 28.>

② 제1항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24. 03. 28.>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03. 28.>

제38조 [이사의 직무]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 직급 이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순서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이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퇴직금 외 급여, 상여 등)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거나, 그 결의로 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사회

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를 행하고, 지명한 이사가 없을 시에는 정관 제38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의2 [이사회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제42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인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 결의방법, 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 ⑤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46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2인 이하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47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⑧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1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그 사실을 선정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보 칙

제57조 [준용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

② 이 회사는 사업목적 수행 및 내부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규정 및 내규 등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3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구 정관의 부칙은 이 정관의 시행일자로 삭제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자본시장통합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시행시, 본 정관 상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등은 그에 따르고, 본 정관상 (유가)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이사회)

제 정 2000. 02. 15.
개 정 2004. 03. 25.
개 정 2007. 10. 29.
개 정 2010. 05. 28.
개 정 2011. 10. 21.
개 정 2012. 05. 25.
개 정 2013. 05. 16.
개 정 2015. 11. 19.
개 정 2016. 08. 18.
개 정 2022. 11. 17.
개 정 2024. 03.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규정 제7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1.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 등

④ 이사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고경영진 직속의 독립 전담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1. 경영진이 구축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평가
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및 민원업무의 분석·평가 등에 대한 검토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 부서 업무개선 요구 및 후속 조치 평가

-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회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한다.
- ② 이사회회장은 이사회 회의의 의장을 관장한다. 이사회회장의 유고 시 또는 기타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회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명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38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 ⑥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⑦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제1항과 제3항의 사실을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2, 5, 8, 11월) 세번째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회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 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결의방법)** ① 이사회 회의의 모든 결정이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다. 영업보고서의 승인
- 라. 재무제표의 승인
- 마.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바.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단, 상법 제542조의 9 및 동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규모의 거래에 한한다.)

②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 나. 신주의 인수권에 관한 사항
- 다.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위임
- 라. 전환사채의 발행
-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바.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 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 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취소

③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 나.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
- 마.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바.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사. 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폐지
- 아. 전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또는 분기 중 증자 시 전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에 증자금액을

- 가산한 금액 대비 5% 이상의 투자
- 자. 30억원 이상의 중요한 계약의 체결
- ④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⑤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결정 <신설 2024. 03. 28.>
 - 나.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 다. 상법 제398조의 적용 대상인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라. 이사의 직위 위촉 및 해촉
 - 마.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1) 정관, 지배구조내부 규범, 이사회 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내부통제규정 및 위험관리규정 폐기에 관한 사항
 - (2)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
 - 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위원의 선·해임
 - 사. 이사의 상법 제397조2의 적용 대상인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내부통제정책·위험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정책,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규정」 및 위험관리정책의 운영 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마.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기타 사항
 -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사규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사후 승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계자의 출석)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이사회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12조(의사록) 이사회 의사경과 요령 및 결과는 간사가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취득권) 각 이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부 기록 및 문서를 열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사외이사의 전문가 자문권) 사외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와 권한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관련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이며, 회사 내부의 직원 등의 협조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사로서의 직무와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변호사, 회계사 기타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외이사의 위원회 참가)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개진 및 의결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제 정 2016. 08. 18.

개 정 2020. 03. 10.

개 정 2024. 03. 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공시)

-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이사회 의 구성 과 운영 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 의 구성 현황

제5조 (이사회 의 구성)

-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⑤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배구조법 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에 정하는 법령(이하'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와 여신거래 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 특정 거래기업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서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 ②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이 정하는 사항을 결의한다.
- ③ 이사회는 종합적인 경영분석,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의 결과,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10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3.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제4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사외이사의 대한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3.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4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3. 28.>
- ② 제1항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이사의 퇴임)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3. 상법 및 관련법령 또는 정관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의 현저한 부적정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특별 결의된 경우

제 5 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7조 (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2,5,8,11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역할 및 책임, 주주 및 고객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 한다.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위원회(이하 본장에서 “위원회”라 함을 각 조 제목의 위원회를 말한다)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 후보를 물색, 심사,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앞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후보가 관련 법령 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감사위원회)

- ①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 수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4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총괄임원 및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⑥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⑦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⑨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리스크관리위원회)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보수위원회)

- ① 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④ 위원회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의 및 연차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26조 (임원의 자격요건)

- ① 임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임원으로서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③ 제7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7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8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원은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 선임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담당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간은 별도의 정함에 의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업무집행책임자 퇴임)

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고용계약기간)의 만료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인사관계 규정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 4.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임원에 대한 교육)

-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내부 및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임원 중 선발된 자에 한하여 외부 위탁 파견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내 대하여 사내 또는 사외 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 (임원의 성과평가)

- ①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은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재무, 고객, 프로세스 및 혁신. 성장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정한다.
- ② 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활용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의 보수는 연봉과 상여금, 직책수당, 퇴직금 등으로 구분한다. 단,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한 별도의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여야 한다.
- ② 연봉은 연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단, 계약에 의한 집행임원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③ 상여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성과보상규정에 따른다.
- ④ 직책수당은 임원의 직책 및 직위 구분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또한 회사의 명에 의하여 해당 직책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해당 직책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34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제35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5조에 명시된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비전과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윤리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경영혁신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추천 받을 수 있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 ③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에 대해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경영승계 절차 개시)

-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시 될 수 있다.
 1. 중도사임
 2.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제재나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초래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34조(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 (경영승계 절차)

-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 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 ③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담당 업무는 인사팀에서 지원하며 운영상황은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매년 1회 보고하도록 한다.

제39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0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퇴임 관련 사항은 제14조(이사 선임) 및

제16조(이사의 퇴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 사유 등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 재선임(연임)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학력/주요경력	비고
이군희	1964.03.01	서울대 계산통계학 학사 University of Missouri 통계학 석사 및 박사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특별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University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California PolyTech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현) 서강대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공 교수	-

2. 재선임 검토사항

1) 이군희 사외이사

① 자격충족 여부

이군희 사외이사는 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여, 금융회사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② 사외이사 활동내역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23년 총 12회의 이사회 중 12회 참석하여 총 79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중기 주주환원정책 승인' 및 '자기주식 취득'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견 개진하며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총 2회의 회의에 모두 참여하여 황현순 전 대표이사 및 엄주성 대표이사를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 보고 받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총 8회의 회의에 모두 참여하여 2022년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인 소통 시간을 가졌으며, 미수금 발생과 같은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③ 재선임(연임) 여부

위와 같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사외이사로서의 2년간의 활동과 실적을 보았을 때 연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엄주성

